

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8 호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4

전화 02-2168-0493

팩스 02-2168-0484

담당 최석범

문서기·번호 신영더블플러스 8 호 1112-01

2011.12.09.

수 신: 수신처 참조

제 목: 이사회 결의 내용 통보(연기주주총회 소집의 건)

1. 귀 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.

2.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42 조에 의거하여 2011 년 12 월 9 일 개최되었던 주주총회가 정족수의 미달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.

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및 제 201 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연기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— 다 음 —

1. 주주 총회일시 : 2011. 12. 23(금) 오전 10 시
2. 주주총회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4 익스콘벤처타워 4 층 신한아이타스(주) 회의실
3. 부의안건 : 제 1 호 의안 - 투자회사 해산승인의 건
4. 펀드코드 : KRZ700208500

첨 부 : 1. 이사회 의사록 사본 1 부 끝.

수신처 : 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(f.3774-3475), 신영자산운용(주) (f.780-0540),
하나대투증권(주) (f.3771-7600)

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 8 호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

법인이사 신영자산운용(주)



제 기 제 차 이 사 회 의 사 록

2011년 12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4 신한아이타스㈜ 회의실에서
이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
위하여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8호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 (“본 회사”)의 이사회를 개최하다.

이사 및 감독이사총수 3 명

참석한 이사 및 감독이사 수 3 명

제1호 의 안 : 연기주주총회 소집의 건

의장은 정관 제47조제2항제1호에 의거 상기 의안을 상정하고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 제201조에 의거 2011년 12월 09일 개최되었던 주주총회가 불성립된 관계로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및 제201조 에 의거 당 의안의 필요성을
자세히 설명한 후 출석이사의 심의를 요청한 바, 출석이사 상호간 신중한 토의가 있는 후
다음과 같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다.

- 다 음 -

1. 주주총회 일시 : 2011. 12. 23(금) 오전 10시
2. 주주총회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-24 익스콘벤처타워 4층 신한아이타스(주) 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투자회사 해산 승인의 건

이상으로 금일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 (회의종료시각
12시)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 아래에 기명
날인하다.

2011년 12월 09일

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8호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

의장, 법인이사

신영투자신탁운용

감 독 이 사

이 인 수

감 독 이 사

박 상 주

